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7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【의원발의】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2. 3.
경제도시위원회

1. 검토과정

○ **안 건 명**: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**발 의 자**: 고명욱 의원 등 7명(이진환, 최홍린, 서보영, 황국주, 도하석, 박정환)

○ **발의일자**: 2026. 1. 22.

○ **회부일자**: 2026. 1. 22.

○ **검토기간**: 2026. 1. 22. ~ 1. 28.

2. 제안이유

○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○ 지원대상,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

○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5조)

○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(안 제6조 ~ 제7조)

○ 포상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○ 제정 조례안: 붙임

○ 관계법령

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3조, 제10조
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
-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

○ 비용추계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6. 1. 22. ~ 2. 1.)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-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지원대상, 구청장의 책무, 지원사업, 협력체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이면서 외국인주민인 경우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」에서 규정한 사항을 추가 적용하여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,

-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, 상담, 안전교육, 문화·체육행사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,

-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○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는 의사소통의 한계와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각종 위험에 노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,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기준 등록 외국인근로자가 2,896명에 이르고 있어 제도적으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.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의 취지에 부합하며 안전 사각지대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>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외국인근로자”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

2.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·노동·고충 상담

3.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 등 교육사업

4.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

5.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·체육행사 개최

6.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협력체계)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출입국관리법

제18조(외국인 고용의 제한)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.
② ~ ⑤ (생략)

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

제23조(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. 단기취업(C-4), 별표 1의2 중 14. 교수(E-1)부터 22. 선원취업(E-10)까지 및 29.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으로 한다. 이 경우 “취업활동”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1.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

2.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

3. 별표 1의2 중 27. 결혼이민(F-6)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

③ 별표 1의2 중 26.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1.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. 다만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2.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3.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④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⑤ 별표 1의2 중 28. 관광취업(H-1)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
⑥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,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2. 별표 1의2 중 26. 재외동포(F-4) 또는 29. 방문취업(H-2)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

3.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(F-5)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

⑦ ~ ⑧ (생략)